

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기관 []등록 []변경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	전화번호	
	소재지			
	대표자 성명			
변경사항 (등록사항 변경시 작성)	변경 전		변경 후	
	변경 사유 발생일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등록신청하는 경우	1. 영 제40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),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.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·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·장비 명세서	수수료 없음
	등록변경하는 경우	1.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. 등록증	
공단 확인사항	1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. 법인인 경우: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. 개인인 경우: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공단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